

이와 더불어 이공현 재판관은 단순위헌으로 처리해도 시장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했으며, 조대현 재판관은 방송법 제73조 제5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광고주나 방송광고대행사와 직접 방송광고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제한한 대행금지부분도 위헌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의 요지에서 제시된 입법자의 의견을 해석해 보면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광고판매회사의 시스템은 제한경쟁시스템으로 방송광고판매회사가 종교방송, 지역민방을 일정부분 분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면서 방송광고 가격조정위원회 등의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송광고공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이한 사실은 프로그램쿼터제와 프로그램 제작지원금 등은 지상파방송사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직접 하는 경우에 제시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대현 재판관의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에 제시한 의견이 실제적으로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방송광고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광고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방송광고판매시스템이 경쟁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의 개정과 더불어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시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위상과 더불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주체, 소유제한, 출자제한, 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기준으로 보면, 독립적 방송광고 판매형태는 없어지지만 당분간 제한적 경쟁체제 제도로 전환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정부의 허가제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개념은 다르

지만 현실적으로는 2002년 2월의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안)의 발전적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립적 영업활동의 위헌 판결은 단순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광고정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① 방송광고공사의 위상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수행하던 공적사업인 공익광고, 광고교육, 출판·연구, 광고박물관, 광고문화회관, 남한강수련원 등에 대한 논의에 광고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② 방송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방송광고료의 14/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사가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민영방송사업자의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방송광고판매회사가 경쟁시스템으로 전환되면 방송광고수수료체계도 방송사와 방송광고판매회사간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결국 방송광고수수료제도가 커미션시스템에서 Fee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③ 방송광고요금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방송광고공사의 시급제를 기본으로 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에 의한 방송광고요금제도에서 시청률이 우선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④ 방송광고 운영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중간광고를 포함한 총량제가 이번 기회에 실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위헌 결정으로 방송광고의 판매방식이 경쟁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시점에 시장경쟁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종합적인 방송광고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방송광고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광고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방송광고시장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광고학계, 광고업계, 방송업계가 공동으로 방송광고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3.3**



방송광고독점판매 위헌 결정, 방송광고 새 시대를 열자

지난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독점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위헌’이나 방송광고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계법 개정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헌 결정이 있기까지 지난 28년간 방송광고독점판매제도 개선의 결과를 되짚어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논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경쟁미디어업의 도입 방향을 예측해 본다. 아울러 바람직한 경쟁미디어업 환경은 무엇이며,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와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① KOBACO 탄생에서 위헌 결정까지, 제도개선 주요 경과
- ② 헌법재판소결정전문
- ③ 방송광고독점판매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 쟁점 분석
- ④ 경쟁미디어업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
- ⑤ 경쟁미디어업 도입이 광고시장에 미칠 영향
- ⑥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